

#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3,392,674	14,201,780
일반회계	433,378,609	13,001,358
특별회계	40,014,065	1,200,422
기타특별회계	40,014,065	1,200,4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255,190	307,656
수질개선특별회계	14,309,560	429,2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1,470	13,244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4,319,975	129,599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500,000	15,000
하수도특별회계	10,187,870	305,63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33,282천원이고, 재난·재해예비비는 1,447,82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